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별정직 6급 상당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2. 9. 00. 공포·시행)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 인구정책총괄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(2022. 9. 00.~ 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7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의2.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

별표 2 중 총계 “863”을 “864”로 하고, 별정직 계 “5”를 “6”으로 하며, 장관정책보좌관(3급상당 또는 4급상당) 1 다음에 “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2의2 중 총계 “865”를 “866”으로 하고, 별정직 계 “5”를 “6”으로 하며, 장관정책보좌관(3급상당 또는 4급상당) 1 다음에 “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 1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인구정책실) ① ~ ⑥ (생략)	제8조(인구정책실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⑦ ----- -----.
1. ~ 21. (생략)	1. ~ 2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21의2.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</u> <u>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</u> <u>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</u>
22. · 23. (생략)	22. · 23. (현행과 같음)
⑧ ~ ⑱ (생략)	⑧ ~ ⑱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2]

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(제35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863</u>	<u>864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별정직 계	<u>5</u>	<u>6</u>	+1
•	•	•	
장관정책보좌관(3급상당 또는 4급상당)	1		
<u>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2의2]

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(제35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865</u>	<u>866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별정직 계	<u>5</u>	<u>6</u>	+1
•	•	•	
장관정책보좌관(3급상당 또는 4급상당)	1		
<u>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